

2025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급기준

(단위 : 백만원)

항목	선사(불륜)		포워더(FCL)		항로개설	수출 화주
	규모비	증가비	규모비	증가비		
실적 기간	2024. 11월 ~ 2025. 10월 실적					
예산 배정	165		165		400	60
	66	99	66	99		
지급 대상	연1,000TEU 이상 선적 선사		연1,000TEU 이상 선적 포워더		항로 신·증설 선사	평택항 이용 수출기업
지급 기준	선사별 실적 점유비율로 배분	목표물동량 설정 및 목표물동량 초과 순증가분 비율에 따른 예산 배분 ※목표물동량설정 ☞ (직전년도처리실적 ×102%)	연1,000TEU 이상 처리 포워더 대상 화물처리량 의 규모비 (점유비율로만 산정)	목표물동량 설정 및 목표물동량 초과 순증가분 비율에 따른 예산배분 ※목표물동량설정 ☞ (직전년도처리실적 ×102%)	신규로 개설된 항로로 공동 운항 선사 포함(공동운항선사 지급액은 항로내 선박투입 비율에 따라 지급)	회원사 수출 물동량 합산 실적이 연간 총 1,000TEU 이상이며, 공사와 MOU (공고 후 1개월내)를 체결한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 관련 협회(경기도 지역 상 공회·의소 포함)에 등록된 수출기업 (지급액은 컨테이너 처리 실적 점유비율로 배분)
		※당해년도, 직전년도 실적이 1,000TEU 이상인 업체만 해당		※당해년도, 직전년도 실적이 1,000TEU 이상인 업체만 해당		
		경기도에 등록된 포워더에 대하여 인센티브 산정 시 10% 가중치 지원				
● 당해년도 항로 개설선사가 1개인 경우 총 4억 중 2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은 선사, 포워더 (점유비, 증가비 항목)에 동일금액으로 배분하여 책정						
☞ 개설선사가 2개 이상 복수 개설 시 신규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총 4억을 나눠 지급함 (1/n)						
● 규모비와 증가비 중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규모비와 증가비 중 큰 금액만 지급 - 규모비보다 증가비가 큰 경우에는 규모비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규모비가 더 큰 경우에는 증가비 실적 산정에서 제외함						
제한 조건	당해년도 신규 취항 선사 포함	1개 선사당 배정 예산40% 이내에서 지원 (4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액을 증가업체[40%초과업체제외]들 갯수로 나누어 해당값을 나머지 업체에 동일지급)	LCL 화물 취급 실적은 제외	1개 포워더당 배정 예산 40% 이내에서 지원 (4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액을 증가업체[40%초과업체제외]들 갯수로 나누어 해당값을 나머지 업체에 동일지급)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 (지급일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선사에게 지급)	1개 협회당 배정예산 40% 이내에서 지원
		직전년도 3개월 미만의 신규 취항 선사 제외		LCL 화물 취급실적 및 당해 신규선적포워더 제외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운항 영업 선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가 가능하며 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기타 사항	●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 휴항 또는 휴업한 선사·포워더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당해 연도에 휴항(휴업)했다더라도 재취항 (영업재개)하여 3개월이상 취항(영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선사(포워더) 증가분 배분 후 잔액발생 시 규모비 항목으로 배분 가능. ● 당해년도 항로 미개설 시, 잔여금액은 선사 50%, 포워더 50% 의 비율로 점유비·증가분 항목내 배분 지급. ● 수출 화주 인센티브 신청 기업이 없거나 잔액 발생시, 잔액총액은 선사와 포워더 인센티브 항목에 50:50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함. ● 항로 신·증설 항목 지급대상 자격조건은 개설 시기로부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지속 운영 중이며,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노선에 한함.(인센티브 지급은 지급조건 충족시점의 지급기준에 따름) ● 공동운항중 중도포기시 지급기준이 충족된 선사에는 항로내 선박투입비율에 따라 지급 [예시=> 개설항로: 중국 또는 동남아 1개 항로, 총금액: 2억원, 공동투입선사: A,B 2선사, 기항항로내 선박투입비율 A:B=2:1, 두선사중 B선사가 중도포기하는 경우, 중도포기 선사(B선사)를 제외하고, 운항지속 선사에는 공동운항선사의 선박비율을 제외한 금액(A선사: 약1.3억원)을 지급. ● 평택항 기존 운영중인 항로에서 해외 항로(기존 미기항 국가 포트) 추가기항은 개설·증설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존 운영중인 항로라도 평택항 기항이 추가 되면 신규항로로 인정함(단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 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실적이 있는 선사에게 지급. ● PORT MIS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기준에 따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2개월 이하의 실적사는 첫 영업월을 제외하고 직전년도 월 평균에 대한 연간 물동량 산출 (전년 및 당해년도 화물처리 실적이 연간 1천 TEU 이상 선사, 포워더 대상). ● 수출 화주 인센티브는 신청 시 컨테이너 처리 실적서(공사 양식 제공), 수출신고필증, B/L, Manifest,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지원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